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(안 제115조제7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